

관련 법규

대기배출관리시스템은

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(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)
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(자기측정)
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)
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(자기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에
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구체적인 방법은 "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기측정에 대한
 전신기록·보존에 관한 고시" 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-43호)에
 규정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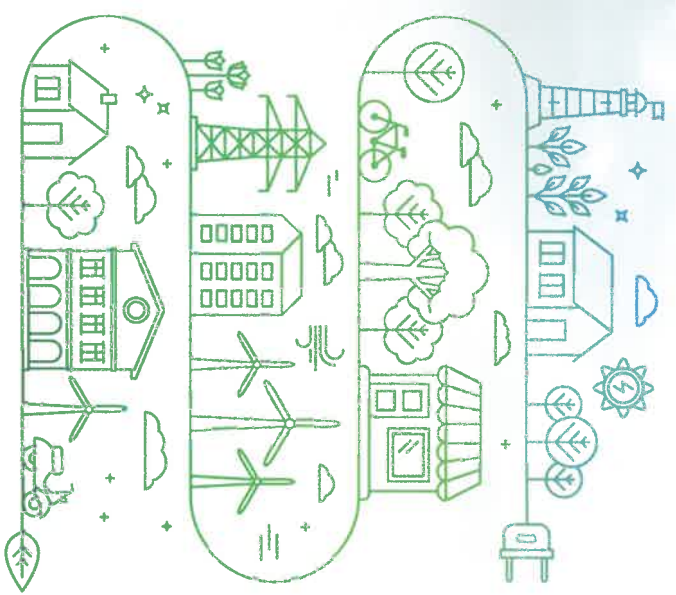
자기측정 및 운영기록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기록하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,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.

-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(과태료)
1. 자기측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2.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결과 활용

- SEMS 자료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파악 뿐만 아니라,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.
-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
- 대기관리 정책 수립
- 미세먼지 예·경보
- 대기환경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
- 대기배출사업장 지도·점검
- 배출시설·방지시설의 운영/관리 현황 파악

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배출관리시스템에 운영기록을 정해진 기한내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



대기배출관리시스템(SEMS)

사용 안내서



국립환경과학원

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해연구과
 * 문의처 : 032) 560-7315, 7316



환경부 · 국립환경과학원